

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(제240조제1항 관련)

위반 행위	해당 법조문	처분내용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41조의2제4항제1호	지정취소
2.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 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 우 가.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 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 게 된 경우 나.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다. 교육에 필요한 적정인력의 교육 전담요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 우	법 제41조의2제4항제2호	업무정지 (30일)